

---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09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승관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16. 마포구청장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09. 11. 30 ~ 12. 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9. 12. 03
-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2

## 2. 기금 운용 규모

### 가.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기정기금액	변경기금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53,468,053	56,518,053	3,050,000	
① 통합관리기금	2007	22,926,688	22,926,688	-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4,722,000	4,722,000	-	
③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996	1,488,001	1,488,001		
④ 자활기금	2003	149,936	149,936	-	
⑤ 노인복지기금	1997	27,903	27,903	-	
⑥ 여성발전기금	2006	575,918	575,918	-	
⑦ 장학기금	2008	5,149,400	8,149,400	3,000,000	
⑧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2006	12,581,943	12,581,943		
⑨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994	239,305	239,305	-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99	601,043	601,043	-	
⑪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991	488,112	488,112	-	
⑫ 옥외광고 정비기금	2009	0	50,000	50,000	
⑬ 도로굴착복구기금	1997	3,079,940	3,079,940	-	
⑭ 재난관리기금	1997	728,129	728,129	-	
⑮ 식품진흥기금	2001	709,735	709,735	-	

## 나. 변경 기금 운용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장학기금	합계	5,149,400	8,149,400	합계	5,149,400	8,149,400
	출연금	3,000,000	6,000,000	고유목적사업비	44,600	44,600
	예치금회수	2,044,600	2,044,600	물건비	2,240	2,240
	이자수입	104,800	104,800	예탁금	0	3,000,000
				예치금	5,102,560	5,102,560
옥외광고 정비기금	합계	0	50,000	합계	0	50,000
	출연금	0	50,000	예치금	0	50,000

### 3. 검토결과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5개 기금에 56,518,053천원으로 지정 기금액 53,468,053천원 대비 약 7.02% 증가(3,050,000천원)한 규모임

○ 변경 기금은 2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출연금 30억 5,000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30억 5,000만원을 운용할 예정임

○ 변경 기금별 사업비 내용을 살펴보면

- 장학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0억원,
-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예치금으로 5,000만원임

- 변경기금 중 장학기금 30억원은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출연되었으며, 2009년도에 신설된 옥외광고 정비기금 5,000만원은 서울특별시에서 광고물정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것으로,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 등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인 기금 관리·운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